

I. 상 정 안 건

정관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제01호

의결일자 : 2024. 5. 9.(목)

1. 의결주문

○ 정관 제22조제2호에 근거하여 정관 일부 개정을 부의함.

※ 정관 제48조에 따라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득한 후 개정함.

2. 제안이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2024년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법인감사에서 우리협회 임원선출 제도, 총회 의결권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에 따라,

○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당연직 정회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임원선출을 위한 기준 및 방식을 전면 개정하여 협회 운영제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관 제22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제1차 임시총회에 상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의원 제도 도입(제28조 ~ 제35조)

- 회원 간 의결권 위임에 따른 공정성 저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출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선출의 직접선거 실현과 위임장 수령으로 인한 논란제거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24년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법인사무 정기 감독결과 시정조치 사항

나.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을 조정(제5조)

- 대의원제도를 도입·운영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협회 임원과 지역기관장 외에 중앙회소속 본부장(9), 노동조합(6) 총 15명이 추가로 대의원자격(당연직 또는 선출직)을 가지게 되어 전체 대의원(약 249명)의 약 21.3%로 점유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임원선출 결과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있어, 협회 소속의 회원자격을 임원, 지역기관장,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회원의 권한과 의무를 수정(제7조)

- 대의원제도를 도입·운영함에 따른 정회원의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회원의 의무를 수정함.

라. 임원 대상별 선출기준을 구분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제11조)

- 회장과 감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하도록 함.
-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며, 선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후임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3개월 내에 선출하도록 함.

※ 비상임 이사 추천 방법에 대한 사항은 2024년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법인사무 정기 감독결과 시정조치 사항

마. 현장투표 외에 전자투표 근거를 마련함.(제11조)

- 회장 및 감사 선거는 투표용지를 활용한 현장투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이하“전자투표”라 한다)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제12조)

- 기존 위원회 구성에서 비상임 이사의 수가 많다는 의견과 상임임원과의 이해관계자로 오해되는 문제가 있어 비상임 이사의 위원 참여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및 외부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고, 협회 내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상임 이사 중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사. 임원 중 감사의 연임을 변경하고 임원별 임기만료일을 개정(제14조)

- 감사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 감사도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임원이 선출될 경우 후임임원 임기만료 시 임시대의원회 반복개최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장과 감사의 임기만료일을 정기대의원회 개최일로 개선하고, 이사의 임기만료일도 선출제도 변경에 따라 임기만료일자 차기 이사회 개최일로 변경함.

아. 임원의 결격사유 일부 추가 및 수정(제15조)

- 성폭력, 정보통신망, 스토킹범죄, 정직 처분 등 신규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기존 결격사유에서 파면, 해임 사유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를 삭제하여 확인에 관한 논란을 제거하고자 함.

자.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등 총회 관련 조문 수정(제22조 ~ 제26조)

- 대의원제도 도입·운영함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차. 이사회 및 재산·회계 관련 조문 수정(제36조 ~ 제53조)

- 대의원제도를 도입·운영함에 따라 기존 이사회 및 재산·회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카. 정관 내 규정된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정리함.

(제54조 ~ 제57조)

- 공중보건, 위험 상황 등 특정 장소에 소집을 통한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회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방법 특례로 전자투표 방식 운영, 총회·대의원회·이사회에 동일한 의결권 제한 조항을 통합하는 등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함.

정관 일부 개정안

정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협회의 임원·지역본부장 및 지회장(직무대행자 포함)·노동조합위원장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회원 가입 거부 및 취소) 협회는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가입한 경우
2. 입회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비방·비난할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4. 협회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한다.

제7조제2항2호의 “총회”를 “총회·대의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안전 관련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를 “안전 관련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11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제12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제12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선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정기대의원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상임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⑥ 회장 및 감사 선거는 투표용지를 통한 현장투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한다)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외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출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3명 이내의 비상임 이사, 3명 이내의 외부위원, 상임이사 1명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의 “위원”과 “선임하되, 협회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외부위원”과 “선임한다”로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의 “상임 임원”을 “상임 임원과 비상임 감사”로,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를 “비상임 이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선출된 다음날로 하고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 :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정기대의원회 개최일

2. 이사 :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일자 차기 이사회 개최일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제6의2 및 제6의3”으로 하고, 제6의2 및 제6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제15조제1항의 “제9호 내지 제11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8호 및 제9호의 “직무와 관련하여”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징계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의 “총회”를 “대의원회”로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의 “총회”를 “총회 및 대의원회”로 개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의 “이사회 및 총회”를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로 개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총회”를 “총회·대의원회”로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임원의 선출 및 직무 관련 규정) 임원의 선출과 직무에 관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선출규정」과 「직제규정」에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①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재적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올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회원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로 올림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총회 의결권의 위임)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를 “제26조”로 올림하고, 제26조의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대의원회

제28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지역본부장 및 지회장으로 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은 3인 이상 회원의 추천으로 각 지역본부 및 지회별 회원총회에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으로 임기는 1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1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15분의 1이 200명을 넘는 경우에는 2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

제29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30조(대의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회원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의원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회 개최 및 의결방법) ① 협회의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대의원회 의결권의 위임) 대의원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대의원회 안건) ① 대의원회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정하여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은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대의원회 의사록) 대의원회 의사록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5조(대의원 규정) 대의원의 자격, 선출·선임·보선 등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선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5장 이사회를 제6장으로 내림하며,

“제29조 내지 제35조”를 “제36조 내지 제41조”로 개정하고, 제32조를 삭제하고, 제56조로 이동하여 조항을 올림한다.

제36조제3호 및 제4호의 “총회”를 “총회 및 대의원회”로 개정하고, 제38조제2항의 “총회”를 “대의원회”로 개정한다.

제40조의 “제28조”를 “제27조”로 개정한다.

제6장의 재산 및 회계를 제7장으로 내림하고, “제36조 내지 제47조”를 “제42조 내지 제53조”로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의 “총회”를 “대의원회”로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총회”를 “대의원회”로 개정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을 “제8장 보칙”으로 내림하고 장명을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4조(비대면 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정의된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결방법 특례) ①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현

장투표와 다른 투표방식(서면투표, 전자투표)을 결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투표,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투표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개인인증 절차가 포함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결권 제한) 회원·대의원·임원은 총회·대의원회·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자신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

제48조를 제5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정관변경) ①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9조 내지 제52조”를 “제58조 내지 제61조”로 개정한다.

부 칙 (2024.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생략)</p> <p>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협회의 임원·<u>감사실장·본부장·지회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산하기관장,노동조합위원장·노동조합사무처장·노동조합부위원장 4명</u> <p>③(생략)</p>	<p>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현행과 동일)</p> <p>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협회의 임원·<u>지역본부장 및 지회장(직무대행자 포함)·노동조합위원장</u> <p>③ (현행과 동일)</p>
<p><u><신 설></u></p>	<p><u>제6조2(회원 가입 거부 및 취소) 협회는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가입한 경우 2. 입회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비방·비난할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현행	개정안
	<p><u>4. 협회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u></p>
<p>제7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① 정회원은 <u>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u> 의결권을 가진다.</p> <p>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총회·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의무 3. ~ 5. (생략) 	<p>제7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① 정회원은 <u>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u> 의결권을 가진다.</p> <p>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2. 총회·<u>대의원회</u>·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의무 3. ~ 5. (현행과 동일)
<p>제10조(임원) ① (생략)</p> <p>② 제1항제2호의 비상임 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안전 관련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3. (생략) 	<p>제10조(임원) ① (현행과 동일)</p> <p>② 제1항제2호의 비상임 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2. 안전 관련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u>으로 재직</u>한 사람 3. (현행과 동일)
<p>제11조(임원선출) ① <u>임원</u>은 제12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u>사람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1조(임원선출) ① <u>회장 및 감사</u>는 제12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u>후보자 중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u></p> <p>② <u>이사는 제12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선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 임원의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u>총회에서 그</u>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u>감사 및 이사의</u>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u>정기총회</u>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p> <p>③ <u>제1항 및</u>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③ 임원의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u>감사의</u>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u>정기대의원회</u>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p> <p>⑤ 불가피한 사유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상임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u>규정으로 정한다.</u></p> <p>⑥ 회장 및 감사 선거는 투표용지를 통한 <u>현장투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한다.)</u>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⑦ 그 외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u>「임원선출규정」에서 정한다.</u></p>
<p>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u>7명 이내로</u> 구성하되, <u>비상임 이사 4명 이내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3명 이</u></p>	<p>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동일)</p> <p>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u>이사회에서 선임하되, 3명 이내의 비상임 이사, 3명 이내의 외부위원, 상</u></p>

현행	개정안
<p><u>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u> 다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학계, 산업계 및 안전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u>하되, 협회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생략)</p>	<p><u>임이사 1명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u> 다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u>외부위원</u>은 학계, 산업계 및 안전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u>한다.</u></p> <p>④ (현행과 동일)</p>
<p>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임 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 이사 <u>및 비상임 감사</u>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 3년 2. 이사 및 감사 : 2년 <p>②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u>총회에서</u> 선출된 다음 날로 하고, <u>임기만료일은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임 임원 <u>과 비상임 감사</u>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 이사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 3년 2. 이사 및 감사 : 2년 <p>②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선출된 다음 날로 하고 <u>임원의 임기만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회장 및 감사 :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정기대의원회 개최일</u> 2. <u>이사 :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일자 차기 이사회 개최일</u>

현행	개정안
<p>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u><삭 제></u> (제11조 제5항으로 이동)</p>
<p>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생략)</p> <p>1. ~ 6. (생략)</p> <p>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현행과 동일)</p> <p>1. ~ 6. (현행과 동일)</p> <p>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p> <p>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p>

현행	개정안
<p><u>9.</u>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생략)</p> <p>나. (생략)</p> <p><u>10. 직무와 관련하여</u>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u>11. 직무와 관련하여</u>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생략)</p>	<p><u>7.</u>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현행과 동일)</p> <p><u>8.</u>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u>9.</u>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u>10. 징계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②(현행과 동일)</p>
<p>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동일)</p>
<p>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p>	<p>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p>

현행	개정안
<p>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장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략)</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6. (생략) 	<p>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동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6. (현행과 동일)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7조의2(임원의 선출 및 직무 관련 규정) 임원의 선출과 직무에 관하여</p>

현행	개정안
	<p><u>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선출규정」 과 「직제규정」 에서 정한다.</u></p>
<p>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u></p> <p>2. <u>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p>3. <u>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u></p> <p>4. <u>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u></p> <p>5. <u>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u></p> <p><u><신 설></u></p>	<p>제22조(총회의 <u>구성 및 의결사항</u>) ① <u>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재적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u></p> <p><u><1. ~ 6.호 삭제></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u>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1. <u>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u></p> <p>2. <u>그 밖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u></p>
<p>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u>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u></p>	<p>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p>1. <u>재적회원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안전을</u></p>

현행	개정안
<p>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p> <p>1. 재적회원 과반수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2.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때</p> <p>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p>	<p><u>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u></p> <p>2. <u>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u></p> <p>3. <u>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때</u></p> <p>4. <u>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p> <p><u><삭 제></u></p> <p>②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방법) ① 협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p>	<p>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방법) 협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삭 제></u> (제31조 제2항으로 이동)</p>

현행	개정안
<p><u>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p>	
<p><u>제25조(총회 의결권의 제한) 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자신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항</u> <u>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u> <p><u>②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 또는 회원은 제23조제2항 제1호, 제24조의 이사 및 회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u><삭 제></u> (제56조로 이동)</p>
<p><u>제26조(총회 의결권의 위임) ①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u>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u>② 제1항에 따라 1명의 회원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회원 수는 30명으로 한다.</u></p>	<p><u>제25조(총회 의결권의 위임)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u>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u></u>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u><삭 제></u></p>
<p><u>제27조(총회 안전) 총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안전에 한정하여 의</u></p>	<p><u>제26조(총회 안전) 총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안전에 한정하여 의</u></p>

현행	개정안
<p>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으로 채택할 수 있다.</p>	<p>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으로 채택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대의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8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u>대의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u></p> <p>③ <u>당연직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지역본부장 및 지회장으로 한다.</u></p> <p>④ <u>선출직 대의원은 3인 이상 회원의 추천으로 각 지역본부 및 지회별 회원총회에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으로 임기는 1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u></p> <p>⑤ <u>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1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15분의 1이 200명을 넘는 경우에는 2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9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u>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현행	개정안
	<p>1. <u>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u></p> <p>2. <u>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p>3. <u>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u></p> <p>4. <u>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u></p>
<p><u><신 설></u></p>	<p><u>제30조(대의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u></p> <p><u>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u></p> <p>1. <u>재적 회원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u></p> <p>2. <u>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때</u></p> <p>3. <u>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p> <p><u>③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의원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31조(대의원회 개최 및 의결방법) ① 협회의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u></p>

현행	개정안
	<p><u>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32조(대의원회 의결권의 위임) 대의원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u></p>
<p><u><신 설></u></p>	<p><u>제33조(대의원회 안건) ① 대의원회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정하여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은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34조(대의원회 의사록) 대의원회 의사록은 제27조를 준용한다.</u></p>
<p><u><신 설></u></p>	<p><u>제35조(대의원 규정) 대의원의 자격, 선출선임보선 등 정관에 규정되지 않</u></p>

현행	개정안
	<p>은 세부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선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다.</p>
<p>제5장 이사회</p>	<p>제6장 이사회</p>
<p>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총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 9. (생략) 	<p>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동일) 3.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 9. (현행과 동일)
<p>제30조 (생략)</p>	<p>제37조 (현행과 동일)</p>
<p>제31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생략) 	<p>제38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p>제32조(이사회 의결권의 제한)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u><삭 제></u> (제56조로 이동)</p>

현행	개정안
<p><u>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u></p> <p><u>1. 자신이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항</u></p> <p><u>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u></p> <p><u>②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30조제2항제1호, 제31조제2항의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u>제33조</u> (생략)</p>	<p><u>제39조</u> (현행과 동일)</p>
<p><u>제34조</u>(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u>제28조</u>를 준용한다.</p>	<p><u>제40조</u>(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u>제27조</u>를 준용한다.</p>
<p><u>제35조</u> (생략)</p>	<p><u>제41조</u> (현행과 동일)</p>
<p><u>제6장</u> 재산 및 회계</p>	<p><u>제7장</u> 재산 및 회계</p>
<p><u>제36조 ~ 제39조</u> (생략)</p>	<p><u>제42조 ~ 제45조</u> (현행과 동일)</p>
<p><u>제40조</u>(협회의 지출) ①(생략) ②(생략) ③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p>	<p><u>제46조</u>(협회의 지출) 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p>

현행	개정안
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41조 ~ 제45조 (생략)	제47조 ~ 제51조 (현행과 동일)
<p>제46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회장은 협회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회장은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회장은 협회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회장은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제47조 (생략)	제53조 (현행과 동일)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8장 보칙
<u><신 설></u>	제54조(비대면 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를

현행	개정안
	<p><u>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u> <u>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경우</u> <u>3. 제10조제1항에 정의된 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u>
<u><신 설></u>	<p><u>제55조(의결방법 특례) ①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현장투표와 다른 투표방식(서면투표, 전자투표)을 결합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서면투표,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p> <p><u>③ 전자투표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개인인증 절차가 포함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u></p>
<u><신 설></u>	<p><u>제56조(의결권 제한) 회원·대의원·임원은 총회·대의원회·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u></p>

현행	개정안
	<p><u>견은 진술할 수 있다.</u></p> <p><u>1. 자신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항</u></p> <p><u>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u></p>
<p><u>제48조(정관변경)</u>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u>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u>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u></p> <p><u>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u></p> <p><u>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u></p> <p><u>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u></p> <p><u><신 설></u></p>	<p><u>제57조(정관변경) ①</u>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u>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u></p> <p><u><1. ~ 4.호 삭제></u></p> <p><u>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u>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u></p>

현행	개정안
	<p><u>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u></p> <p><u>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u></p> <p><u>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u></p>
<u>제49조 ~ 제52조</u> (생략)	<u>제58조 ~ 제61조</u> (현행과 동일)

임원선출안

의안번호

제02호

의결일자 : 2024. 5. 9.(목)

1. 의결주문

○ 정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임기 만료(2023. 12. 14.)에 따른 상임임원(회장)을 선출함.

○ 임기가 만료(2024. 5. 9.)되는 상임임원(경영기획이사)을 선출함.

[관련근거]

정 관

제10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임원

가. 회장 : 1명

나. 상임이사 : 3명 이내

2. 비상임임원

가. 감사 : 1명

나. 비상임이사 : 7명 이내

② (생략)

제11조(임원선출) ① 임원은 제12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 ③ (생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회장) 후보 공보

순번	성명	학력	주요경력
기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의정부고 ○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강대 대학원 법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명여대 특임교수(부원장) ('23.8.~현재)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3.12.~현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23.8.~현재) ○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22.8.~현재) ○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20.3.~현재)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 ('89.4.~'17.9.)
	임무송(61세)		
기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운호고 ○ 서울과기대 안전공학 학사 ○ 서울과기대 안전공학 석사 ○ 서울과기대 안전공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외이사 ('23.1~현재) ○ 서울 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2.3~'26.3) ○ 대한산업안전협회 상임감사 ('20.12~22.12) ○ 대한산업안전협회 연수원장 ('20.2~20.7)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19.1~'20.2) ○ 중부지역본부 본부장 ('16.3~'18.3) ○ 서울과기대 겸임교수 ('97.8~'10.8)
	이재현(63세)		
기호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고 ○ 연세대 사회학 학사 ○ 코넬대 노동관계학 석사 ○ 아주대 법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21.2.~'24.4.)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8.10~'20.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 ('17.2.~'17.1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13.9.~'14.7.) ○ 고용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04.2~'04.6)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 사무관, 서기관 ('96.7~'00.1) ○ 고용노동부 안양사무소 산업안전과장 ('95.5~'96.7)
	김왕(60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경영기획이사) 후보 공보

순번	성명	학력	주요경력
기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운호고 ○ 충북대 농화학 학사 ○ 한국방통대 법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울대 취·창업지원처 교수 ('21.4.~현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획관리이사 ('18.5.~'20.4.)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15.9.~'18.3.) ○ 고용노동부 지청장, 고용센터소장 등 ('98.8~'15.9.)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90.6~'98.8.) ○ 철도청 국제협력 담당 등 ('86.3~'90.6.)
	정정식(63세)		
기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울진 종합고 ○ 경희대 조경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 ('21.8.~현재) ○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문위원 ('21.4.~현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장 등 ('90.12.~20.12.)
	이승우(64세)		